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
일부개정령안

기 관 명 (부 서 명)	국무위원 ○○○ (행정안전부장관)
연 월 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를 마칩

1. 개정이유

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에 따라 기존 시행령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동법 시행규칙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인용조문 변경사항 반영(안 제7조)

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에서 현행 영 제38조 제4항이 제5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행정안전부령 제 호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 중 “영 제38조제4항”을 “영 제38조제5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 · 지역 관리카드) <u>영 제38조제4항</u> 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대상 시 설 및 지역의 관리에 관한 카드 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.	제7조(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 · 지역 관리카드) <u>영 제38조제5항</u> ----- ----- -----.